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70

제출연월일 : 2011. 06. 13.
제출자 : 유인환 의원 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1년 06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 동 목 적

○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○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○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
○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
○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○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○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

○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○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○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○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

○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○ 2011년 06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○ 장문혁의원, 유인환의원, 함명섭의원, 박종욱의원, 이정율의원, 정문섭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06.20 (월)	제1차 조례특위 (14:0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.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.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6.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7.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.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.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.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.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 12.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